

제 815 호  
1980.12.24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편집: 문화공보관 박 종 우  
전화 75-7834

인쇄: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20

# 시 보

## 차 례

### ◎ 규 칙

제 1881 호 : 서울특별시수도사업특별회계회세판정공무원관직지정에 관한규칙(중개정규칙) .....	3
제 1882 호 : 서울특별시급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	5
제 218 호 (교육위원회규칙)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교육구청과 이하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	5
제 219 호 (교육위원회규칙)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지방공무원 인사, 사무처리규칙(중개정규칙) .....	14

### ◎ 고 시

제 416 호 : 도시계획시설(도로)실효고시 .....	18
제 417 호 : 도시계획사업(주차장)시행허가변경 .....	19

<이면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1024

제 418 호 :	도시계획시설 ( 공용의정사 ) 변경결정및지적승인	19
제 419 호 :	도시계획사업 ( 여객자동차정류장 ) 사업시행변경허가 ( 기간연장 )	20
제 420 호 :	도시계획사업 (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 시행허가	20
제 421 호 :	도시계획사업 ( 시장 ) 시행변경허가 ( 기간연기 )	23
제 422 호 :	도시계획사업 ( 도로 ) 실시계획인가 ( 변경 )	23
제 423 호 :	보호수지정	24
제 424 호 :	도시계획사업 ( 소매시장 ) 시행허가	24
제 425 호 :	도시계획사업 ( 시장 ) 시행허가	25
제 426 호 :	도시계획사업 ( 학교 ) 시행허가변경	26

) 공 고 .

제 371 호 :	공인개작사용승인공고	26
제 372 호 :	공인신조사용승인공고	27
제 390 호 :	공인신조사용승인공고	27
제 392 호 :	도시계획사업 ( 광장 ) 완료공고	28
제 393 호 :	소방용기계기구제조업소행정처분공고	28
제 72 호 ( 종로구공고 ) :	공인신조공고	29
제 16 호 ( 강서구공고 ) :	공인개작공고	30
제 75 호 ( 교육위원회공고 ) :	교육공무원공노퇴직수당지급공고	30

## 규 칙

서울특별시 수도사업특별회계 회계  
판재공무원 관직지정 관한 규칙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자 락 영 수  
1980년 12월 24일

## ◎ 서울특별시 규칙 제 1881호

서울특별시수도사업특별회계  
회계판재공무원관직지정에  
관한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수도사업특별회계회계판재  
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을 대  
체로 같이 개정한다.

제3조(관직지정)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수도사업특별회계정수관경리관,  
재권관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출  
납원과 그 분임자를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1. 수도국(이하 "본청"이라 한다)

정수관	수도국장
분임정수관	업무과장
경리관	수도국장
분임경리관	경리과장
물품관리관	경리과장
분임물품관리관	각과장
재권(총괄)관리관	수도국장
분임재권관리관	각과장

지출원	경리과경리계장
수입금출납원	업무과과장계장
세입세출외현금	경리과경리계당해
출납원	업무주무자
물품출납원	경리과판재계장
분임물품출납원	각과주무계장
일시전도자금출	각과주무계장
납원	다면,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때 별도 지정

2. 구청및 사업소(이하 "청소"라  
한다)

## 가. 구청

정수관	구청장
구경리관	구청장
구분임정수관	총무국장
분임재권관리관	구청장
물품관리관	구청장
수입금출납원	수도1과장
분임수입금출납원	수도1과과리계
분임지출원	재무과장
세입세출외현금	재무과경리계장
출납원	

물품출납원	재무과장
분임물품출납원	수도1, 2과장
일시전도자금출	구청장이 필요 할때
납원	마라 지정

## 나. 사업소

정수관	소의장
분임경리관	소의장
물품관리관	소의장

31-4

제 815 호

시

분임재원관리관	소 의 장
수입금출납원	수납담당제장 (계제가 없는 사업소는 수납 담당주무자)
분임지출원	경리담당제장 (계제가 없는 사업소는 경리 담당주무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주무제장 (계제 가 없는 사업 소는 서부주무 자)
물품출납원	주무제장 (계제 가 없는 사업 소는 서부주무 자)
임시전도자금출 납원	소외장이 필요 에 따라 지정

제 5 조 (경리관의 직무위임) 다음  
과 같이 한다.

제 5 조 (경리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  
의 경리관은 본청의 분임경리관에  
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케 한다.

1. 예정금액 3,000만원 미만의  
공사
2. 예정금액 1,000만원 미만의  
용역 및 물품의 제조가공
3. 예정금액 500만원 미만의  
물품구매, 임대차운송, 기타

보 1980.12.24

4. 보수, 여비, 급량비, 제세공과금,  
관공비, 정보비,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전도  
자금
  5. 단가계약품목의 납품지시 및 조  
달물품의 조달요청
- ② 구 경리관은 구청의 분임경리관에  
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케 한다.
1. 예정금액 300만원 미만의 공사
  2. 예정금액 100만원 미만의 용역  
및 물품의 제조가공
  3. 예정금액 50만원 미만의 물품  
구매, 임대차운송 기타
  4. 보수, 여비, 급량비, 제세공과금,  
관공비, 정보비, 기타법령 또는 조  
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전도  
자금
  5. 단가 계약품목의 납품지시 및 조  
달물품의 조달요청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급수조례시행규칙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영수

1980년 12월 24일

## ◎ 서울특별시 규칙 제 1882 호

서울특별시 급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급수조례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공용급수전의 설치 및 폐전)

① 공용급수전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전용, 급수전을 소유하지 아니한 영세민이 20세대이상 집단 거주하는 지역

2. 기설 공용 급수전을 이용하는 주민이 40세대를 초과하여 급수에 지장이 있는 지역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교육구청과  
이하 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0. 12. 24.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 이창간

## ◎ 교육위원회규칙 제 218 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교육구청  
과 이하 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교육구청과  
이하 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무인가 교육기관의 단속에 관  
한 사항.

제3조 제1항중 "경리계"는 "경리  
계, 관재계"로 하고 제2항중 "경  
리계장"을 "경리세상, 관재계장"로  
제5항제2호중 "제3항제16호"를  
"제4항제5호"로 하고 제7호를  
삭제한다.

제3조 제6중 제10호를 다음과 같  
하고 제11호 내지 제20호를 삭제  
한다.

10. 불자철약에 관한 사항

제3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제  
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관재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문  
장한다.

1. 교육재산 관리

2. 건물구조변경 및 농도변경에 관  
한 사항

3. 학교재해복구 공제회에 관한  
사항

4. 철거건물 처분

5. 재산의 차입 및 취득

6. 공용용지관리에 관한 사항

7. 무허가 건물철거

8. 공공용지 사용허가

9. 국유재산 양수 및 차입

31-6 제 815 호 시

보 1980.12.24

10. 보통재산의 관리 11. 방재업무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81.1.1. 시행한다.
선 · 구 대 조 표	
구 ( 현 행 )	신 ( 개정 )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교육구청 파이히 사무분장 규칙	파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교육구청의 파이히 사무분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조 ( 목적 ) 파동
제 2 조 ( 학무과 ) ①학무과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초등교육계, 중등교육계, 사회교육계, 보건교육계, 학사계를 둔다. ②초등교육계장, 중등교육계장, 보건체육계장은 장학사로, 사회교육계장, 학사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③초등교육계는 초등교육(학령전 교육을 포함한다)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 2 조 ( 학무과 ) 파동
1. 교육과정 운영지도 2. 장학 및 연구학교 지도 3. 시청각교육 및 기재에 관한 사항 4. 학교문고에 관한 사항 5. ( 삭제 ) 6. ( 삭제 ) 7. ( 삭제 ) 8. 교육행사 9. 학교내외 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교원인사, 재교육 및 복무에 관한 사항 11. 삭제 12. 기타 타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15호 시

보 1980.12.24 31-7

구(현행)	신(개정)
④ 중등교육계는 중학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과정 운영지침	
2. 전학 및 연구학교 지도	
3. 시청각 교육기지에 관한 사항	
4.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	
5. 중학교 무시험 일정비정	
6. 학생 생활지도	
7. 교육행사	
8. (삭제)	
9. (삭제)	
10. 장학지도에 관한 사항	
11. 입학, 전·편입학 및 학생경원에 관한 사항	
12. 교원의 인사, 재교육 및 부무에 관한 사항	
13. (삭제)	
14. (삭제)	
15. 학생동원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도감독	
16. 기타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	
⑤ 사회교육계는 사회교육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설강습소 설립폐쇄 및 시도감독	
2. 사설강습소의 목적, 명칭, 위치, 소유 및 설립자 명의 변경승인	
3. 사설도서관 지도감독	
4. 청소년 직업학교 지도감독	
5. 풍민학교 고등풍민학교 지도감독	

31-8 제815호 시

보 1980.12.24

구(현행)	신(개정)
6. 공·사립공립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및 각종학교의 교원 인수·판리	
7. 학교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 법인의 정관변경(부칙, 명칭, 위치, 사업 및 재산변경은 제외한다)과 임원 취임 및 지도감독	
8. 상근임직원 정수승인에 관한 사항	
나. 감사추천에 관한 사항	
다. 이사회 소집승인에 관한 사항	
라. 임원해촉임 및 승인에 관한 사항	
3. 시설	8. 무인가 교육기관의 단속에 관한 사항
(3) 보건체육제는 보건체육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교육의 장학지도	
2. 체육교사, 양호교사, 인사, 재교육 및 복무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육영단체 활동에 관한 사항	
4. 학교운동장 관리지도에 관한 사항	
5.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6. 학교보전 위생 및 환경整洁에 관한 사항	
7. 학생체육대회에 관한 사항	
8. 체육진흥관리위원회 조직 및 지도감독	
9. 학생의 국내체육대회 출장승인	
10. 체육복기학교 지도감독	

제 815 호 시

보 1980.12.24 31-9

구(현행)	신(개정)
11.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⑦ 학사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립외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중학교장은 제외) 및 이들에 준하는 특수학교의 교원임용 및 정체에 관한사항	
2. 국민학교·중학교·학생국민저축에 관한 사항	
3. 국민학교·주학교 교과서 등급	
4.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관리에 관한 사항	
5. 중학교·고등학교입학 및 졸업자격 검정고시	
6. 교원해외여행에 관한 사항	
7. 국민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및 교원에 대한 재증명발급	
제3조(관리과) ① 관리과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무계·관리계·기회감사계·경리계·시설계를 둔다. ② 서무계장, 관리계장, 기회감사계장, 경리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하고 시설계장은 지방건축기사로 보한다. ③ 서무계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3조(관리과) ① --- 경리계·관제계 --- 경리계장·관제계장  ③ 학동
1. 일반서무 및 관인판수	
2. 문서수발통제 및 보존	
3. 각종회의 또는 행사에 관한 사항	

31-10 제 815 호 시

보 1980.12.24

구(현행)	신(개정)
4. 보안, 민원에 관한 사항	
5. 법령 및 조례규칙에 관한 사항	
6. 공무원의 인사(교원은 제외한다) 및 복무교육에 관한 사항	
7. 출납 공무원의 임면	
8. 민방위훈련과 예비군 민방위대 편성에 관한 사항	
9. 청사 및 차량관리	
10. 연금 및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11. 기타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관리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짜동
1. 교육비 특별회계와 예산에 관한 사항	
2. 자율적 경비 실험실습비 및 육성회비 관리	
3. 학급편제 및 수용계획 수립	
4. 외무취학과 학구제 운영 및 학군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유치원·국민학교·중학교·기술학교 및 이들에 준하는 특수학교와 각종학교의 설립폐지	
6. 제5호의 학교를 유지경영하는 법인의 설립폐지와 지도감독	
7. 제5호의 학교의 학칙변경에 관한 사항	
8. 제6호의 법인의 정관변경 기본재산처분, 임원취·해임인가	
9. 제5호의 사립 각급학교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제 615 호 시

보 1980.12.24 31-11

구 (현 행)	신 (개 정)
(5) 기회 감사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5) - - - - -
1. 서정 쇄신에 관한 사항	1. 좌 동
2. 제 3 항 제 16 호의 학교의 감사업무	2. 제 4 항 제 5 호 - - - - -
3. 상급기관의 감사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3. 좌 동
4. 지정 및 비위 사항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4. 좌 동
5. 비위 사항 조사결과에 따른 징계의 결요구에 관한 사항	5. 좌 동
6. 각급학교의 사무인계 인수에 관한 사항	6. 좌 동
7.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목적에 관한 사항	7. 좌 동
8. 통계에 관한 사항	8. 좌 동
9. 물자절약에 관한 사항	9. 좌 동
10. 상급기관의 시책과 지시사항의 조치	10. 좌 동
(6) 경리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6) 좌 동
1. 세출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1. 세출예산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사용료 및 수수료 기타 세입 정수에 관한 사항	2. 좌 동
3. 과오납 반환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3. 좌 동
4. 수입증지 출납에 관한 사항	4. 좌 동
5. 대여장학금 상환	5. 좌 동
6. 학생복지시설조성기금 수납에 관한 사항	6. 좌 동

31-12 제815호 시

보 1980.12.24

구 (현 행)	신 (개정)
7. 물품출납보관에 관한 사항	7. 좌 등
8. 세입·세출의 현금출납보관	8. 좌 등
9. 계약에 관한 사항	9. 좌 등
10. 교육재산관리	10. 물자절약에 관한 사항
11. 건물구조변경 및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11. 삭 제
12. 학교 재해복구 공체회에 관한 사항	12. 삭 제
13. 철거 건물 처분	13. 삭 제
14. 재산의 차입 및 빼득	14. 삭 제
15. 공공용지 관리에 관한 사항	15. 삭 제
16. 무허가장을 철거	16. 삭 제
17. 공공용지 점용허가	17. 삭 제
18. 국유재산 양수 및 차입	18. 삭 제
19. 보통재산의 관리	19. 삭 제
20. 방재업무에 관한 사항	20. 삭 제
<u>⑦ 신설</u>	
<u>⑦ 판재계는 다음 자호의 사항을 분장한다.</u>	
1. 교육용 재산관리	
2. 건물구조변경 및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 재해복구 공체회에 관한 사항	
4. 철거 건물 처분	
5. 재산의 차입 및 빼득	
6. 공공용지 관리에 관한 사항	
7. 무허가장을 철거	
8. 공공용지 사용허가	
9. 국유재산 양수 및 차입	
10. 보통재산의 관리	

제 815 호 시

보 1980.12.24 31-13

구 (현 행)	신 (개정)
<p><u>⑦ 시설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u></p> <p>1. 시설전축제회수립</p> <p>2. 건축공사 및 부대시설의 집행</p> <p>3. 토화설비의 시설 및 감독</p> <p>4. 육성회 시설사업의 영사지도 및 감독</p> <p>5. 관급·자재수급</p> <p>부 칙 (1973. 1.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1973. 10.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1974. 3.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1977. 7.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1979. 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1979. 3.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1979. 7.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1979.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11. 방재업무에 관한 사항</p> <p>⑧ 좌동</p> <p>부 칙 (1973. 1. 25) 좌동</p> <p>부 칙 (1973. 10. 6) 좌동</p> <p>부 칙 (1974. 3. 5) 좌동</p> <p>부 칙 (1977. 7. 11) 좌동</p> <p>부 칙 (1979. 2. 13) 좌동</p> <p>부 칙 (1979. 3. 16) 좌동</p> <p>부 칙 (1979. 7. 12) 좌동</p> <p>부 칙 (1979. 12. 29) 좌동</p> <p>부 칙 (1980. 12. .) 이 규칙은 81.1.1부터 시행한다.</p>

31-14 제 815 호 시

1980.12.24.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지방공무원 인사사무처리 규칙 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0.12.24.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이 창간[回]

◎ 교육위원회 규칙 제 219 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지방공무원  
인사사무처리규칙 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지방공무원 인사사무처리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2 조(임명장 또는 임용장) ①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승진 또는 전보(기관간의 전출·전입을 포함한다) 임용될 때에는 임용권자는 당해 공무원에게 임명장 또는 임용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으며 3급이하 공무원의 전보와 4급을 둘 이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에 있어서는 인사발령통지서(별지 제 24호 서식)의 교부로써 임명장 또는 임용장의 수여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임명장 또는 임용장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2급내지 3급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가. 정규공무원 임용·승진의 임명장: 별지 제 23 호 서식

나. 전보의 임용장: 별지 제 23-2 호 서식

2. 4급잡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가. 정규공무원 임용의 임명장: 별지 제 23-3 호 서식

나. 승진의 임명장: 별지 제 23 호 서식

다. 전보의 임용장: 별지 제 23-2 호 서식

3. 4급을 둘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가. 정규공무원 임용·승진의 임명장: 별지 제 23-3 호 서식

나. 전보의 임용장: 별지 제 23-2 호 서식

③ 임명장 또는 임용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날인한다.

④ 서보로 임용되거나 전직·강임·면직·징계·직위제·휴직·복직·호봉재시정·승급되거나 위원으로 임명·해임·위촉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은 당해 공무원에게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한다.

⑤ 소속공무원의 국내훈련·국외출장·휴가명령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⑥ 직위제를 행함에 있어서는 인사발령통지서에 직위 해제처분사유 설명서(별지 제 36 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 23 호 서식) 내지 (별지 제 23-3 호 서식)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815호 시

보 1980.12.24 31-15

[별지 제 23 호 서식] 2 급내지 3 급임명장 및 4 급감수의 증진임명장

1. 임명장

→ (교육위원회기관마크)

임명장

(성명)

(임명사항)

년 월 일

(임용권자)

260mm × 380mm 일체용지 (특급) 210mg/m<sup>2</sup>

2. 표지

가. 외면

→ (교육위원회기관  
(지름 7.5cm 금박) 마크)

27cm

27cm

나. 내면

39.5cm

26.5cm

26.5cm

다. 재질

표지는 두께 3mm의 판지에 외면은 흑청색 포크로스로 내면은 백색 그라비야지로 일친다.

31-16 제 815 호 시

보 1980. 12. 24

[별지 제 23-2 호서식] 전보임용장

→ (교육위원회 기관마크)

임 용 장

(직명)

(성명)

(임명사항)

년 월 일

(임용권자)

195mm × 275mm 인쇄용지 (복급) 210g/m<sup>2</sup>

[별지 제 23-3 호서식] 4급감류의 정규공무원임용 및 4급율류이하의  
임명장

→ (교육위원회 기관마크)

임 명 장

(직명)

(성명)

(임명사항)

년 월 일

(임용권자)

240mm × 340mm 인쇄용지 (복급) 210g/m<sup>2</sup>

현 행	개 정
<p>제 32 조 (임용장 및 발령통지서)</p> <p>① 공무원이 정규공무원 (시보를 제외한다)으로 임용되거나 승진·전직된 때에는 임용권자가 당해 공무원에게 임용장 (별지 제 23 호서식)을 수여한다.</p> <p>이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p> <p>② 소속공무원이 시보로 임용되거나 전보·장임·면직·징계·직위해제·휴직·복직·호봉재사정·승급·전출·전입되거나 위원으로 임명·해임·위촉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공무원에게 인사발령통지서 (별지제 24 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의 국내외훈련·국내외출장·휴가명령·당직명령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p> <p>③ 직위해제를 행함에 있어서는 인사발령통지서에 직위해제처분 사용설명서 (별지제 36 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p>	<p>제 32 조 (임명장 또는 임용장)</p> <p>①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승진 또는 전보 (기관간의 전출·전입을 포함한다) 임용될 때에는 임용권자는 당해 공무원에게 임명장 또는 임용장을 수여한다.</p> <p>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대리수여할 수 있으며, 3급이하 공무원의 전보와 4급을 류이하 및 기동적 공무원의 승진에 있어서는 인사발령통지서 (별지제 24 호서식)의 교부로써 임명장 또는 임용장의 수여에 간음할 수 있다.</p> <p>② 제 1 항의 임명장 및 임용장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p> <p>1. 2급내지 3급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p> <p>가. 정규공무원 임용·승진의 임명장 : 별지제 23 호서식</p> <p>나. 전보의 임용장 : 별지제 23-2 호서식</p> <p>2. 4급감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p> <p>가. 정규공무원 임용의 임명장 : 별지제 23-3 호서식</p> <p>나. 승진의 임명장 : 별지제 23 호서식</p> <p>다. 전보의 임용장 : 별지제 23-2 호서식</p>

31-18 제 815 호 시

보 1980.12.24

현 행	개 정
	<p>3. 4 군율류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가. 정규공무원 임용·승진의 임명장 : 별지 제 23-3 호서식 나. 전보의 임용장 : 별지제 23-2 호서식</p> <p>(3) 임명장 또는 임용장에는 임용권자와 직인을 날인한다.</p> <p>(4) 시보로 임용되거나 전직·강임·면직·징계·직위해제·휴직·부직·호봉제 사정·승급되거나 위원으로 임명·해임·위촉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공무원에게 인사발령 통지서를 교부한다.</p> <p>(5) 소속공무원의 국내외훈련·국외출장·휴가명령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p> <p>(6) 직위해제를 행할에 있어서는 인사발령 통지서에 직위해제처분사유설명서(별지제 36 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고 시

◎ 서울특별시 고시 제 416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실효고시

1. 건설부 고시제 214 호(78.8.2)  
로 결정된 당시관내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효되었기 도시계획법제 14 조와 건

설부고시제 463 호(79.12.10)의 권한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파와 관할구청 도시경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 12. 24  
서 울 특 별 시 장

제 815 호 시

보 1980.12.24 31-19

○ 도로설정주석							
구분	클급	번호	폭면	연장	시 절	종 절	비 고
설정	광로	67	40	1,700	용산동2가	한남동(광장70)	
"	"	68	40	3,000	한남동(광장71)	청계천7가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 ◎ 서울특별시고시제 417 호

도시계획사업(주차장) 시행허가변경

- 서울특별시고시제 101(79.3.2) 호 및 서울특별시고시제 508(79.12.11) 호로 도시계획사업(주차장) 시행허가한 마포구 석산동360번지의 47필지( $57,752m^2$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24조 및 동법 제26조와 전설부 고시제 463호(79.12.10)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허가기간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한다.
- 본체도서는 마포구청 도시정비과에 바쳐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80.12.24.

서울특별시장

## ○ 다음(변경사항)

- 당초사업기간: 1979.3.2~1980.12.31
- 변경사업기간: 1979.3.2~1981.12.31

## ◎ 서울특별시고시제 418 호

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

변경결정및지적승인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동의 청사)을 다음과같이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제12조 동법제13조 및 전설부 고시제 463호(79.12.10)의 권한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 본체도서는 서울특별시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자 바쳐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12.24.

서울특별시장

## ○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 적	비 고
기정	공용의 청사	동작구 노량진동 47-2 부근	$9,180 m^2$	
변경	"	"	$8,956 m^2$	감 224 $m^2$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31-20 제 815 호 시

부 1980.12.24

◎서울특별시고시제 419호

도시계획사업 (여객자동차정류장)  
사업시행변경허가 (기간연장)

1. 서울특별시 고시제 650호(78.12.15.)로 사업시행허가된 도시계획사업 (여객자동차정류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24조 및 전설부 고시제 463호(79.12.10.)의 권한 위임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을 변경허가 (기간연장)하였기 고시한다.
2. 판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12.24.

서울특별시장

- 가. 사업시행지: 구로구 독산동  
668-35
- 나. 명칭: 도시계획사업 (여객  
자동차정류장)
- 다. 면적: 2,514평
- 라. 사업시행자: 상신교통(주)  
한국한
- 마. 사업기간: 당초: 78.12.15-  
80.12.20.  
변경: 78.12.15-  
83. 6. 30.

◎서울특별시고시제 420호

도시계획사업 (일단의주택  
지조성사업) 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 고시제 333호(78.7.5.)로 결정되고 동고시제 346호(78.7.11.)로 치적승인된 강남구 양재동 526 일대 취락구조 개선사업지인 잔디마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전설부고시제 463호(79.12.10.)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하였기 고시한다.
2. 판계도서는 강남구청 취락구조 기획실과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12.26.

서울특별시장

- 가. 사업시행지: 강남구 양재동 526 일대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
- 다. 사업 규모 (면적): 4,776평
- 라. 사업시행자 주소. 설명: 강남구  
양재동 498 번지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박태성

제 815 호 시

보

1980.12.24 31-21

나. 사용의 차수 및 준공예정일:  
 1) 차수예정일: 시행허가증시  
 2) 준공예정일: 1981. 6.30.  
 바. 수용또는 사용한도지의 소재지 지목,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사. 토지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토 지 조 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1	강남구 양재동	526-1	대	46.3평	미 등기		
2	"	-4	"	40.8	"		
3	"	-7	"	21.2	"		
4	"	-8	"	67.4	"		
5	"	-10	임야	76.2	"		
6	"	-11	"	83.5	"		
7	"	-12	"	128.9	"		
8	"	-13	"	130.7	"		
9	"	-14	"	128.9	"		
10	"	-15	"	148.8	"		
11	"	-16	"	150.6	"		
12	"	-17	"	121.6	"		
13	"	-19	"	114.3	"		
14	"	-20	"	94.4	"		
15	"	-21	"	111.3	"		
16	"	-22	"	108.9	"		
17	"	-23	"	116.2	"		
18	"	-25	"	59	"		
19	"	-26	"	168.9	"		
20	"	-27	"	108.9	"		
21	"	-28	"	83.5	"		
22	"	-29	"	125.2	"		
23	"	-30	"	103.5	"		

31-22 제 815 호 시 보 1980.12.24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쳐	소유자	판매일	비 고
24	강남구 양재동	526-31	일야	107.1 평	미등기		
25	"	-32	"	143.4	"		
26	"	-33	"	105.3	"		
27	"	-34	"	36.3	"		
28	"	-35	"	10.9	"		
29	"	-37	"	9.1	"		
30-	"	-38	"	10.9	"		
31	"	-39	"	12.7	"		
32	"	-40	"	16.3	"		
33	"	-41	"	25.4	"		
34	"	-42	"	0.6	"		
35	"	-43	"	114.3	"		
36	"	-44	"	137.9	"		
37	"	-45	"	210.5	"		
38	"	-46	"	181.5	"		
39	"	-47	"	199.7	"		
40	"	-48	"	136.1	"		
41	"	-49	"	136.1	"		
42	"	-50	"	125.2	"		
43	"	-51	"	145.2	"		
44	"	-52	"	152.5	"		
45	"	-53	"	150.6	"		
46	"	-54	"	319.4	"		
	합 계			4,776 평			

## ① 서울특별시 고시 제 421 호

도시계획사업(시장) 시행  
변경허가(기지연기)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75 호 (80.5.26)로 도시계획사업(시장) 시행 허가된 강남구 대치동 623, 624 번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조, 제 26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63 호 (79.12.10)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시장) 시행 변경허가하고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12.26

서울특별시장

- 1) 사업시행지: 강남구 대치동 623, 624 번지
- 2) 사업의 종류 및 면적: 도시계획사업(시장) 시행
-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대지 1,324.5평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2,952.15평
- 4)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강남구 대치동 623 와림상가(주) 선명실
- 5) 사업의 확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전

가. 착수예정일: 1980.5

나. 준공예정일: 1980.12.31

## 변경 후

가. 착수예정일: 변경없음

나. 준공예정일: 1981.5.31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의의 권리 명세: 생략
-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도시정비과로 문의바랍니다.

## ② 서울특별시 고시 제 422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  
계획인가(변경)

1. 전설부 고시 제 313 호 (78.10.20)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 249 호 (79.6.8)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한 원효대교 건설공사 사업계획 일부를 도시계획법 제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고 동법 제 26조와 건설부고시 제 463 호 (79.12.10)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용산, 영등포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12.

서울특별시장

31-24 제 815 호 시

보 1980.12.24

1. 사업 시행의 위치 : 용산구 원효로 4가 부근~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 국교 및 시범아파트 주변	○ 신규지정 수목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원효대교 건 설공사	1. 지정구분 및 지정번호 : 노거수 제 113호
3. 사업 규모 : 북단 : ①램프 $B = 7-12m$ $L = 1,034m$ ②녹지대 3,281평 ③도로 21,779평 남단 : ①램프 $B = 10.8m \sim 43m$ $L = 538m$ ②녹지대 143평 ③도로 3,488평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 봉동 512번지
4. 사업 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3. 소유자 : 서울특별시 (도봉구·방 학동 남궁환)
5.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종전인가일 : 인가일~80.12.31 변경 : 인가일~ 81.10.31	4. 관리자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 봉동 599 박강원
6.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지 : 별첨 생략	5. 수종 수령 수고 흉고침경 느티나무 200년 15m 1.5m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한 판례인 주소, 성명 : 별첨토지조서 (서 울특별시고시 249호 79.6.8과동일함)	6. 지정 및 해제년월일 : 1980.12 지정 및 해제기관 : 서울특별시장
④ 서울특별시고시 제 423 호 보호수지정 산림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노거수 지정하였기 이를 고시 한다.	1980.12. 서울특별시장
1980.12. 서울특별시장	⑤ 서울특별시 고시 제 424 호 도시계획사업 (소매시장) 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56호 (79.2.6)로 도시계획시설 (소매시 장) 결정 및 동고시 제 75호 (79.2.16)로 지적·승인된 동대문 구 장안동 147-11번지 토지의 6필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소 매시장) 시행을 도시계획법 제 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5조와 전설부고 시 제 463호 (79.12.10)의 원한위

제 815 호 시

보 1980.12.24

31-25

임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하고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과 및 동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12.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시행지 : 동대문구 장안동

147-11번지의 6필지

나. 사업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소매시장 : 풍안시장)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1) 면적 : 1,184 평방미터

2) 규모 : 판매장 및 판리시설

(전용 2동 1,213.69 평방미터 -  
지하층 306.13 평방미터, 1층  
453.78 평방미터, 2층 453.78 평  
방미터)

라.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동대문구  
장안동 147-14

풍년설업(주) 대표이사 김재욱

마. 사업의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1) 착수일 : 80.12.26

2) 준공일 : 81. 1. 20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  
지 지번, 지목, 지적 및 토지소유  
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3항의 관  
제인의 주소, 성명 : 청부(생략)

사. 사업계획서 및 계획평면도 : 첨부(생략)

◎ 서울특별시고시 제 425 호

도시계획사업 (시장) 시행허가

1. 건설부고시 제 3호 (75.1.13)로  
토지구획정리지구로 고시된 암사도  
지구획 정리지구내 토지중 시장부  
지로 설정된바 있는 47 구획 (세비지)  
토지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시행허  
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조와 건  
설부고시 제 463호 (79.12.10) 규정  
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1파의 강동구청 도시설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12.27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암사도  
지 구획 정리지구 47 구획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 도시계획사업 (시장)

명칭 : 현대종합시장 (소매시장)

다.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주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47 브락

성명 : 풍암상사주식회사 공동

대표 권만현, 김범수

라. 사업의 규모

31-26 제 515호 시

보 1980.12.24

지적 : 1,000 평

건축면적 : 3,816.38 평 (시하 585.60 평)  
1 층 1,235.73 평 2 층 1,624.06 평  
3 층 346.48 평 유탑 24.51 평)

마. 사업의 차수 및 준공예정일

차수년월일 : 사업시행 허가일로 부터 1개월 이내

준공예정일 : 차수일부터 1년이내

바. 사용할 토지명세 : 토지소재지,

지적, 소유자 위와 같음.

사. 위치 및 계획평면도 : 별첨 (도면생략)

아. 공사설계도면 : 별첨 (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426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변경

1. 서울특별시고시 제 538 호 (78.10)

마. 사업기간

당 초		변 경	
차 공	준공예정일	차 공	준공예정일
1979. 7. 9	1980.12.31	1979. 7. 9	1981. 6.30

공 고

◎ 서울특별시 공고제 371 호

공인개각사용승인공고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 9 조에 의거 공고한다.

1980.12.8

서울특별시장

제 815 호 시

보 1980.12.24 31-27

1. 공인명 : 동대문구청장인 (호석, 병사용)		공인의인명	
2. 사용개시일 : 1980.12.15			
3. 공인의인영 : 다음과			
공인의인명			
인		영	
영		공인명	구로경찰서장인(복자인)
공인명	동대문구청장인 및 개인 (호석 병사용)	◎ 서울특별시 공고지 390호	
◎ 서울특별시 공고제 372호		공인신조사용승인공고	
공인신조사용승인공고		서울특별시공인을 아래와 같이 신 조사용승인하고 서울특별시 공인조례제 9조에 의거 공고한다.	
서울특별시공인을 아래와 같이 신 조사용승인하고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9조에 의거 공고한다.		1980.12.13. 서울특별시장	
1980.12.8. 서울특별시장		1. 공인명 : 공무원연금서울특별시 매점운영위원회인	
1. 공인명 : 구로경찰서장인		2. 사용개시일 : 1980.12.30	
2. 사용개시일 : 1980.12.15		3. 공인의인영 : 다음과	
3. 공인의인영 : 다음과			

31-28 제 915호 시

보 1980.12.24

공인인명		
인명	인명	인명
인명	공무원연금서울특별시대정운영위원회인	
인명	공무원연금서울특별시대정제인	
<b>◎ 서울특별시공고제 392호</b>		가) 종류 : 도시계획사업 (광장) 나) 명칭 : 천호사거리가로정비공사
도시계획사업 (광장) 완료공고		3. 사업시행면적 가) 아스팔트포장 $A = 47.68$ 나) 보도부지 $A = 42.92$ 다) 하수도시설 $D = 555m$ 라) 녹지대 4개소
1. 서울특별시고시제 337호 (80.10.28)로 신시계획인가된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제 85조 및 전설부고시제 463호 (79.12.10)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동구청장 5. 사업시행기간 : 1980. 8.20 ~ 1980.12. 3
2. 본 공사완료에 대한 관제도서는 강동구청 도시경비과에 배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6. 준공도면 : 생략
1980.12.27 서울특별시장		<b>◎ 서울특별시공고제 393호</b>
1. 사업시행지 : 강동구천호동 67-5 앞 광장일대		소방용기계기구제조업소 행정처분공고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소방법제 37조제1항 및 동법시행 규칙제 75조2 규정에 의거 소방용기계기구제조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0.12. . 서울특별시장

구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허가번호 및 일자		제조 품목	영업정지사유	영업정지 기간
		허가번호	허가일자			
(주) 일영전자	영등포구 도림동 181-1	서울시제 1-6호	80. 7. 31.	유도등 자동화재 속보기	소방법 제37조 제1항 및 종법 시행규칙 제75조 의 2 규정위반	61. 1. 5 ~ 1. 4

## ◎ 종로구 공고 제 72 호

조례 제 6 조에 의거 신고하였기 때문에  
와 같이 공고함.

공인신조공고

종로구청

주차장시설비 일반화재가 특별회계  
로 변경됨에 따라 수입금 및 분임  
수입금 출납원칙인을 서울특별시공인

1. 사용일자 : 1981. 1. 1.
2. 적인의 인영 : 다음

## 승인의인장

인명		
공인명	종로구주차장시설비특별회계 수입금 출납원칙인	분임수입금출납원인

31-30 제 815호 시

보 1980.12.24

◎ 강서구 공고 제 16 호

공인개작공고

서울특별시 공인조례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월제 1동장직인  
을 개작하였기 동조례제 9 조에 의거

공고한다.

1. 개작사용년월일 : 1980.12.26

09:00

2. 개작된직인 : 신월 1동장인

3. 공인개작인영 : 다음

1980.12.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인 영 부

폐자인

개작인



◎ 서울교위공고 제 75 호

교육공무원공로퇴직수당지급공고

교육공무원공로퇴직수당지급규정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공로  
퇴직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수당지급대상자

공립초, 중등교원으로서 지급일 현재  
재 다음연령과 경력에 해당하는자.

가. 연령

1) 60세이상

2) 신체, 정신상장애로 뇌적을  
원하는자는 55세이상

나. 경력 (교육경력, 교육연구경력)  
교육행정경력통산)

1) 30년이상

2) 다음자호에 해당하는자는  
20년이상

가) 재직중 훈장을 받은자

나) 재직중 자급기관의 장의

제815호 시

보 1980.12.24 31-31

표창을 받은자	금액
1. 제작공사, 도단위이상의 공인된 단체의 장의 표창을 받은자.	6. 지급절차
2. 수당지급일: 1981년 2월 28일	가. 대상자 결정통지
3. 신청기간: 1981.1.12 - 24 (단, 고등학교는 22까지)	지급대상자의 근무학교가 소재 하는 교육구청장 또는 고등학교 교장에게 통지한다.
4. 신청절차 소정신청서에 건강진단서 등을 구 비하여 신청인의 소속기관 및 갑 독청을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나. 수당지급장소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5. 지급액 기준호봉액의 100분의 50에 해당 하는 금액에 지급배수를 곱한	7. 기타사항 상세한 사항은 각 교육구 청 또는 당교육위원회에 문의할 것

1980.12.29.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